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

1. 대상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하이 다이내믹 하이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8765

2. 주요 변경 내용 :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12.95%→15.44%)
-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다소높은위험) → 2등급(높은위험))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변경 시행일 : 2023년 1월 20일

4. 변경 대상 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www.hi-asset.com) 및 해당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구분	정정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3등급 [다소높은위험]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위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1.~10. (생략)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 (현행과 같음)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구의 연혁	연혁 추가	(신설)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 (12.95%→15.44%) 투자위험등급 변경(3등급(다소높은위험) → 2등급(높은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6. 집합투자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총비용 일치시점 : 1년 7개월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총비용 일치시점 : 1년 6개월
8. 집합투자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신탁계약서 제17조제3호다목, 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6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신탁계약서 제17조제3호다목, 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p>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u>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해지위험 :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해지위험 :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p>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p>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 12.95%]</p> <p>(추가)</p>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연환산 표준편차 : 15.44%]</p> <p>※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는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로써,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 변동성 값이 클수록 투자신탁의 위험은 커집니다.</p>

			<p>※ 위험등급변경 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변경일</th> <th>변경 전 위험등급</th> <th>변경 후 위험등급</th> <th>변경사유</th> </tr> </thead> <tbody> <tr> <td>2022. 01.18</td> <td>3등급 (다소높은 위험)</td> <td>3등급 (다소높은 위험)</td> <td>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실제 수익률 변동성)</td> </tr> <tr> <td>2023. 01.20</td> <td>3등급 (다소높은 위험)</td> <td>2등급 (높은위험)</td> <td>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td> </tr> </tbody> </table>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2. 01.18	3등급 (다소높은 위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실제 수익률 변동성)	2023. 01.20	3등급 (다소높은 위험)	2등급 (높은위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2. 01.18	3등급 (다소높은 위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실제 수익률 변동성)												
2023. 01.20	3등급 (다소높은 위험)	2등급 (높은위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p>	<p>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p>	<p>주 1) (생략) (추가)</p> <p>주4) (생략) (추가)</p>	<p>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p> <p>주 1) (현행과 같음)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th> </tr> </thead> <tbody> <tr> <td>기타비용</td> <td>941</td> </tr> </tbody> </table> <p>주4) (현행과 같음)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th> </tr> </thead> <tbody> <tr> <td>증권거래비용</td> <td>-</td> </tr> </tbody> </table> <p>※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th> </tr> </thead> <tbody> <tr> <td>금융비용</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94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94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작성기준 2021.11.30)	금융비용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작성기준 2022.11.30)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갱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갱신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갱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갱신	
제 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①~②(생략)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같다)을 최초로</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①~②(현행과 같음)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같다)을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시</p>	

		<p>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중략)</p> <p>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중략)</p> <p>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2) 수시 공시</p> <p>①~⑦(생략)</p> <p>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⑩(추가)</p>	<p>(2) 수시 공시</p> <p>①~⑦(현행과 같음)</p> <p>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⑪(생략)</p>	<p><u>⑩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 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u> 가. <u>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 산의 취득 또는 처분</u> 나. <u>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 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다. <u>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 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u> 라. <u>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u> ⑪(현행과 같음)</p>
[붙임] 용어풀이			
[붙임]용어풀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 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 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 다.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구분	정정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위험등급	투자위험등급 변경	투자위험등급 : 3등급 [다소높은위험]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위험]
투자비용 ※ 1,000만 원을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의 예시(단위 : 천원)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p>주 3)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입니다.</p>	<p>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p> <p>주 3)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입니다. (<u>기준일자 : 2022.11.30</u>)</p>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운용전문인력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총비용 일치시점 : 1년 7개월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총비용 일치시점 : 1년 6개월

